

■ 법률 칼럼

#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지난 2월보다 4개월 3주가 전진하여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0년 6월22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가 2023년9월1일 이전인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3순위 전문직(숙련 포함)의 국무부 I-485 접수 가능일 (우선일자-2023년 2월1일)로 지난 2월과 같습니다. 그러나 USCIS는 2022년 9월8일을 접수 가능일로 따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편집수일)가 2022년 9월8일 이전인 경우만 편집 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지난 2월 보다 1주일 전진하여 2022년 9월8일입니다.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 (PERM 파일 날짜)가 2022년 9월8일 이전이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9월8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priority date (편집 접수일)가 2020년 9월8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8일입니다.

다. Priority date (우선일자, 편집수일)이 2020년 9월8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 4. 취업2순위 문호

우선일자(편집수일: priority date)가 2022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22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5. 종교이민 문호 (안수직)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20년 1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 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하여 지난달에 비해 4개월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USCIS filing charts는 승인 가능일인 2019년 12월1일을 I-485 접수 가능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미국 대통령의 장례 준비

우리가 사는 미국은 올해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매일 선거 유세 뉴스로 이어진다. 참으로 답답하다. 미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이래서 되겠다? 못살겠다 같아보자! 라는 구호가 떠오르지만 출마자의 인품이나 무엇보다 내 조국 한국을 생각하면 ..... 또 마음이 갈팡질팡해진다. 대통령 선거마다 동일하지만 일년 가까이 유세를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준비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랴. 국내 현안 문제, 국제정세의 보고를 매일아침 받는다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각도 조직해야한다. 이러한 것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업무들이다.

최근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당선 후 혹은 재임 동안 본인의 장례 순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역사에 취임 후 32일 만에 서거한 대통령(William H. Harrison)은 있지만 당선자가 서거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도 현직 대통령처럼 국장으로 치르려고 하는 모양이다. 당선인은 초대할 귀빈 명부를 만들고 장례식에서 읽을 성경구절과 찬송가를 선택하고 추모사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등등 자세하게 본인의 의지로 장례예식을 정해 놓는다고 한다. 장지는 국립묘지에 묻힐 것인지 사유지에 묻힐 것인지도 정해 놓는다. 정부청사에서 예식이 있는 식장까지 가는 동안 운구마차의 속도까지 정한다고 한다. 5일 동안 치러지는 국장은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경비를 두고 소수의 국민은 불평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전직 국가 대통령의 장례 기간 동안 온 국민이 가신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국정을 다시 평가하며 무엇보다도 온 국민을 한마음으로 묶으며 그들이 미국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간이 된다.

동포사회의 장례를 인도하면 여러 모습을 보게된다. 한 생을 아름답게 사시고 귀향의 날이 가깝다고 가족들은 알지만 준비를 안 하고, 못 하여 임종 후에 장례 절차와 환송예식 순서를 만든다고 분주한

모습들을 수없이 보고 본다. 예식 인도는 누가하며 기도는, 조가는, 그 가운데 꽃은? 조객들 대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골은 어떻게 하나? 등등 장례를 치른 경험이 없다고 당황하며 장례 준비하느라 진정 사별을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일반적으로 위토하듯 말하는 호상이라 할지라도 사별을 맞는 자녀와 가족들은 슬픔을 느끼고 애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의 여정을 매일 걸어가며 언젠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진데 내 생의 한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날의 준비를 한다면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기쁨이 하늘 높이 치달고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바로 그때에 본인은 남몰래 장례예식도 준비하는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몰랐다. 그 누가 알았으랴?

집안 어른의 귀향은 온 가족을 한 자리로 모은다. 장성한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셨는지? 본인들의 삶에 큰 기쁨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추모하는 모습들은 참 아름답기도 하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은 여가져기 둘러 모여 주객이 전도된 듯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아름답다. 이렇게 장례 기간은 가족을 불러모으고 뿌리를 다시 인식하고 그 가족의 일부가 됨을 자랑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것이 장례를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은 한 국가의 원수로서 만약을 대비하여 본인의 마지막예식을 자세히 준비함으로 위엄과 가치를 지켜간다. 알게 되어 반가운 사실이다. 우리 모두 미국대통령이 되어 내 생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의 마지막예식을 준비해두면 좋으리라.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b>이민법</b>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b>부동산법</b>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b>상법</b>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